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규정

사업장명 : 사회복지법인 고성평화의집 효경의집
소재지 :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3268-92
전화번호 : 055-673-6637
사업종류 : 사회복지 서비스업
시설종류 : 노인요양시설
대표자 : 조명숙
시설장 : 장형욱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규정

1. 입 소 대 상

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(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가능자
- (2)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학대노인이나 기초수급자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자에 대해서 시·군·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조치를 희망하는 자.

2. 입 소 정 원

시설의 입소인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법정정원 60명의 범위 내에서 입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3. 모 집 방 법

본 시설의 모집방법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.

4. 입 소 절 차

입소절차는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- (1) 보호(본인)의무자가 입소신청(서)
- (2) 입소대상자 건강검진진단
- (3) 입소
- (4) 본인에게 입소사유 등 통보

5. 구 비 서 류

입소결정이 된 경우에는 각 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- (1) 입소 계약서 1부.
- (2)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,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.
- (3) 입소자 증명사진 1부.
- (4) 입소자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.
(보호자 - 환자와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)

- (5) 기초생활수급자 - 입소의뢰서 1부.
- (6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.
- (7) 전원연계기록지 1부. (요양시설이용자)

6. 입 소 계 약 에 관 한 사 항

(1) 계약의 목적

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(2) 계약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후 15일 이내에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.
-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(3) 월 이용료

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 아래 계산표와 같다.

§. 2019년도 월 이용료 (30일 이용)

(단위:원)

구분	본인부담금		비급여 비용 (식재료비)	월 이용료	비고
1등급 시설급여(1일) 69,150원	일반(20%)	414,900	144,000	558,900	
	감경(12%)	248,940		392,940	
	감경(8%)	165,960		309,690	
2등급 시설급여(1일) 64,170원	일반(20%)	385,020		529,020	
	감경(12%)	231,010		375,010	
	감경(8%)	154,000		298,000	
3등급 시설급여(1일) 59,170원	일반(20%)	355,020		499,020	
	감경(12%)	213,010		357,010	
	감경(8%)	142,000		286,000	

(4) 기타 비용 부담액

- ① 비급여 비용으로 당해 연도에 책정된 이미용비, 병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등이 있다.
- ② 축탁의 진료는 월 2회로 진료비용은 초진 3,062원, 재진 2,190원이다.
- ③ 병원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진료 후 다음 달 명세서에 청구하여 대납한다.

(5)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

계약자는 시설에 어르신에 필요한 서비스와 의문 사항을 언제든지 문의 및 요구할 수 있고 어르신의 심신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그에 따라 행해야 할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.

(6)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① 본인부담금

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내원 후 설명을 통하여 변동된 본인부담금액을 공지하고 변경된 사항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적용한다.

② 식재료비

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용의 상승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내원 후 설명을 통하여 변동된 식재료비를 공지하고 변경된 사항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.

(7) 특별침실제공

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한 ①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, ② 전염병 또는 감염병, ③ 임종 등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특별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, 특별침실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.

(8) 병원진료

- ① 입소자 건강에 따라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협약의료기관 또는 요청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.
- ②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또는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④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7. 입 소 물 품

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8. 계약의 해지 요건

- (1)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.
- (2)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
- (3)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
- (4) 2회 이상의 이용료 체납으로 독촉고지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(5)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

9. 퇴소

- (1)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, 시설급여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할 수 있다. 다만,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(2) 계약의 해지 요건 시 이에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